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5. 3. 30.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함. (안 제4조의2제5항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의2제5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<p>제4조의2(동 복지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동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사회 내 인적·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, 지원 2. 긴급·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3.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	제4조의2(동 복지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

4.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
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, 지역사회 실정에 맑고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-----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
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
지원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
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
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⑥ · ⑦ (개정안과 같음)